



노사발전재단에 위탁·보조하는 사업 고시

[시행 2024. 1. 3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7호, 2024. 1. 3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노사협력정책과), 044-202-7593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·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탁·보조사업)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·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장의 고용·작업 환경개선 등 일터혁신 지원에 관한 사업
2.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
3. 노사문화 우수 기관·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에 관한 사업
4.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및 컨설팅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
5. 고용상 성차별·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
6.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에 관한 사업
7. 국제노동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

제3조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4-7호,2024.1.3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